

영등포구의회
제16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2. 2. 23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11호로 2012년 2월 13일 고기관 의원외 3인
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
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
마련하는 등 구 차원의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
가능하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
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
수립·추진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나.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부터
제12조까지)

다.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(안 제13조)

라.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이미지 향상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자문하는 이미지 관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고 총 15조 구성되어 있으며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의 책무를,
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에서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 구 이미지의 현황과 전망, 연차별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,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‘이미지관리 기본 계획’을 5년마다 수립·추진하도록 규정하고,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.
-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미지 관리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등을 규정 하였으며, 위원회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안 제6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끝으로,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국내·외 홍보와 과제 육성을 위한 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 사업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, 구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.

-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미지 가치를 향상시켜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
- 조례 시행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구의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,
- 또한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,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홍보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람.